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530099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김기태, 홍성용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5. 2. 5.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6. 2. 5., 이자율 고정금리(기준금리 + 12.72%), 지연배상금율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8%(최고 지연배상금율 1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60,000,000원,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한정근보증하였다.
-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는 2017. 8. 1. 위 대출금 채무(잔액 40,500,000원)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8. 2. 2.까지로 연장하면서 피고의 근보증 한도액을 48,600,000원(= 40,500,000원 × 120%)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고는 2017. 8.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금액 65,7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8. 2. 2., 이자율 변동금리(3개월 KORIBOR + 13.5%), 지연배상금율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8%(최고 지연배상금율 1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78,840,000원,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특정근보증하였다.
- 소외 회사는 여신기간 만료일(2018. 2. 2.)이 경과하도록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23. 5.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에 기해 가지는 대출 원리금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여신거래약정	이 사건 제1 대출계약	이 사건 제2 대출계약
대출원금	37,599,993원	65,700,000원
이자	31,815,775원	56,970,895원
합계액	69,415,768원	122,670,89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48,600,000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하였고,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78,840,000원을 한도로 특정근보증하였는데, 위 각 대출계약의 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당 근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근보증한도액의 합계액인 127,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채무에 관한 약정이율 내지 지연배상금율이 피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자필 서명한 근보증서(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첫머리에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근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의 주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주채무에 대하여 정해진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금액이 위 보증한도액까지 가산되어 보증채무액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보증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근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서는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지연배상금율이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피고의 채무도 그 변제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보증한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채무가 감액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가 2024. 6. 3.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의 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당

근보증한도액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